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34호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 수당을 증액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9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3인 → 4인(제2조)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증액 (별표2)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의 정수)”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로 한다.

제2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2인”을 “3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는”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구분란의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하고, 액수란 중 “일 100,000원”을 “일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 ----- -----.
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u> 단,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1를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u>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성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u>2인</u> 은 의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④ (생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 -- <u>3인</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법」 제71조--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
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
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
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
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생략)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
는 여비는[별표 제2호]에 의하
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

-----.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 수당을 -----.

② 수당은 -----
-----.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
----- 수당-----

-----.

----- 수당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
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
급한다. -----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u>일 비</u>	<u>일100,000원</u>
(생략)	

-----.

[별표 2]

수당 또는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u>수 당</u>	<u>일150,000원</u>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